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368호

「2022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건물지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66호)」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04. 2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22년 신재생에너지보급(건물지원)사업 지원공고

1. 지원 규모 : 78,540백만원

(금액 : 백만원)

구 분		지원 범위	예산 배정액
건물지원사업	태양광	200㎾ 이하	30,000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	10,500
	태양열	1,500㎡ 이하	5,250
	지 열	1,000㎾ 이하	4,000
	연료전지	-	18,200
	기 타	-	590
시범적 사업		-	10,000
계			**78,540**

* 예산 배정액은 사업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3. 지원 기준] 참조

2. 지원 대상

○ 건물지원사업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해당하는 주택 및 제26조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건물·시설물 등을 제외한 모든 건물과 시설물

- 단, 시설물은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센터공고) [별표1] 공급인증서 발급 대상 설비 기준에 따른 부속시설물*에 한함

*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차장과 기타 지상의 부속시설물(건축물대장에 기재되거나 도면에 표기된 시설물)

○ 시범적 사업 : 모든 건물·부속시설물에 기술개발 결과물을 적용하거나, 신기술의 실증 후 신기술 등을 적용하기 위해 해당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일정기간 동안 시범적으로 설치하려는 경우(세부사항은 [별첨 7] 참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자체 또는 개인·법인·단체에 지원하며, 국가가 소유·관리 하는 건물·시설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예산은 사업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해당 건물 자체소비에 한해 지원

○ 태양광 분야는 계통연계를 원칙으로 하며, 한전계통 미연계 지역(도서지역 등)에 한해 독립(축전)형 지원 가능, 이 경우 축전 관련 설비(축전지, 전력 조절기 등)는 지원대상이 아님

○ 지자체 신재생에너지의무화 및 설치의무화 적용 건물은 지원 대상 제외

* 의무비율 충족한 건물에 한해 추가설치 설비는 지원 가능

○ 타 지원 사업으로 중복 지원받은 사업의 경우,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

* 신청자 및 참여기업은 해당 사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 제출완료 이후 확인될 경우, 허위서류 제출에 해당될 수 있음

3. 지원 기준

구 분			지원 범위 (단위 사업당)		지원예산액 (백만원)	보조금 지원단가 (천원, VAT포함)		비 고
건물 지원 사업	태양광 (고정식)	일반	200㎾ 이하		30,000	일반모듈	915/kW	-
						저탄소모듈	981/kW	
		축사 및 축산시설				일반모듈	1,144/kW	
						저탄소모듈	1,236/kW	
		건물일체형 (BIPV)	-		10,500	별도 검토		최대 70% 우대지원 (지붕형 50%, 벽체형 70%)
	태양열 (평판형·진공관형·자연순환식)		1,500㎡ 이하	10.0MJ/㎡·day초과	5,250	639/㎡		심야전력 이용설비 제외
				7.5MJ/㎡·day초과~ 10.0MJ/㎡·day이하		600/㎡		
				7.5MJ/㎡·day이하		558/㎡		
				온수기 6㎡x대수		3,207/대		
				냉난방		943/㎡		
	지열(수직밀폐형)		1,000㎾ 이하		4,000	645/kW		
	연료전지		-		18,200	13,886/kW		-
	기타		-		590	별도 검토		태양광(추적식), 집광채광, 풍력, 수열 등
	소 계		-		68,540	-		-
시범적 사업			-		10,000	별도 검토		-
총 계					78,540	-		-

○ 사업별 보조금 총 지원액은 신청용량에 보조금 지원단가 적용(만원 단위 미만 절사)

○ 보조금 지원단가가 정해지지 않은 분야는 별도 검토 후 지원여부 및 보조금 결정

○ 사업선정을 위한 전문위원회 평가 시, 설비 용량은 조정·변경될 수 있음

○ 태양광 분야 지원 기준 관련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음

- "저탄소모듈"은 저탄소 태양광모듈 제품 지원 운영지침(산업부고시)에 의해 탄소배출량이 670kg·CO2-eq/kW 이하로 검증받아 인정서를 제출한 제품에 한하며, 해당 단위사업 전체에 적용한 경우에 지원단가 적용
- 축사 및 축산시설은 축산업 등록(허가)증을 득한 자가 축산업 등록(허가)증에 신고된 시설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 고정 가변(수동)형 태양광발전설비는 추적식 태양광발전설비에 미포함
- 모듈 정격효율 17.5% 이상 인증제품을 설치하여야 함
- 건물일체형(BIPV)은 사업계획서 검토·평가하여, 최대 70% 한도 내 우대지원

* 사업평가 결과, 설치효과 등 고려하여 부적합 건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건물일체형(BIPV) 인증관련 사항은 [별첨2] "건물지원사업 신청 및 설비설치 시 유의사항" 참조

○ 태양열 설비는 단위면적당 1일 집열량(인증서, 전면적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자연순환식 온수기의 경우 6㎡/대 기준으로 지원

○ 지열은 정미용량이 아닌, 열펌프유닛의 용량을 기준으로 지원단가 적용

○ 계량평가시 주요 배점

- 관계 법령에 따른 산업단지* 내 유휴공간(건물, 부속시설물 등)을 활용하여 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증빙자료 제출 시 +1점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8조에 의해 지정된 산업단지로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로 구분됨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서 제출 시 +2점
- 관계법령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다중이용시설, 학교 증빙 시 +2점

□ 건물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신청자는 센터 내 신재생에너지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REMS) 의무 연계 필수

○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연계방법 등 세부사항은 반드시 신재생에너지 센터 홈페이지 內 REMS 시스템 공지사항* 확인 요망

※ https://rems.energy.or.kr - 게시판 - 공지사항 - 신재생에너지 통합모니터링 시스템(REMS) 연동 유의사항 및 절차 안내

○ 통합모니터링시스템 연계비용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조금 외 추가지원(개소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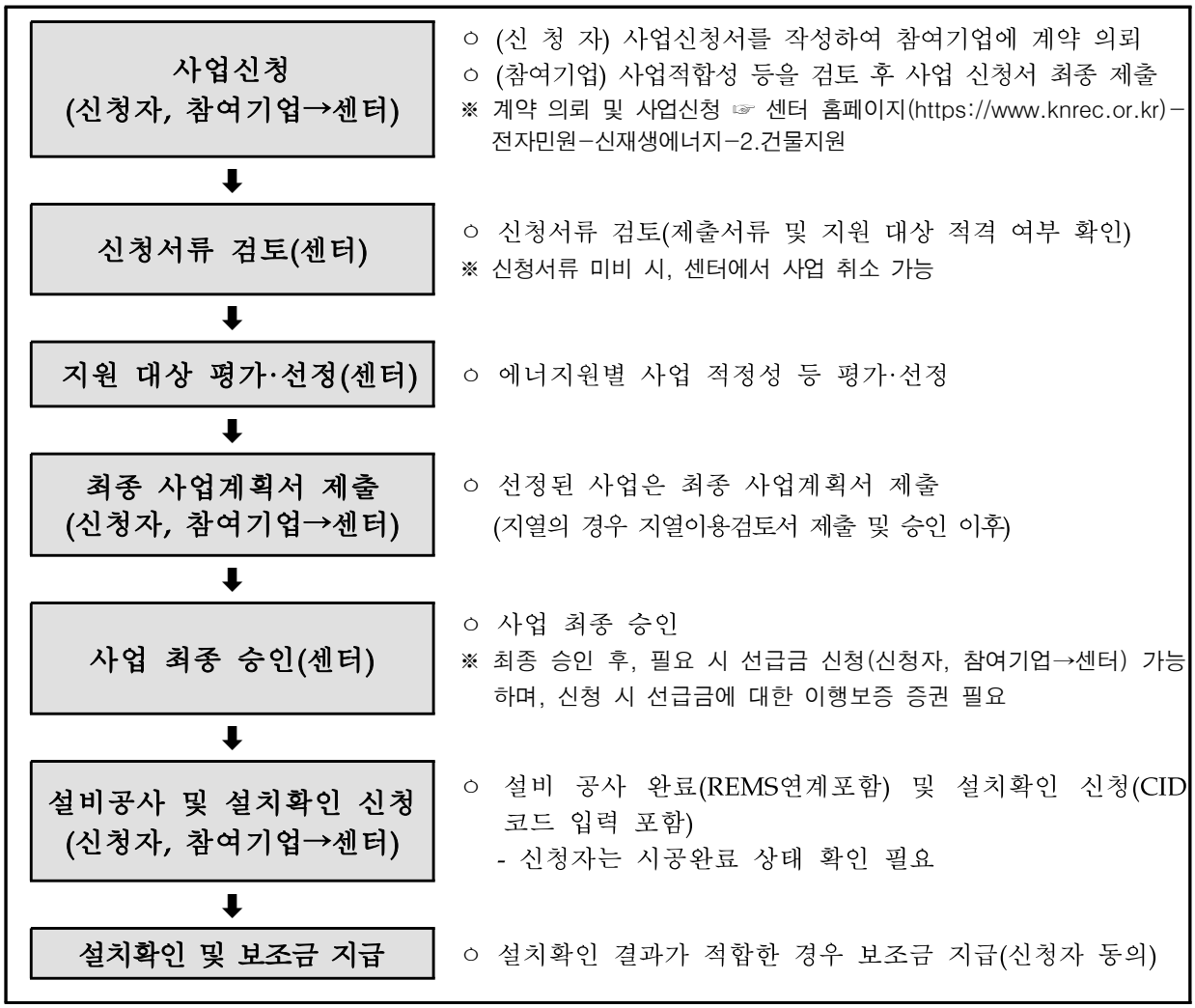
구 분		REMS 연계비용	보조금액	비 고
연계시스템 설치 및 통신비 지원	태양광	500천원/개소	**250천원/개소**	**설치 후 5년간 의무유지, 보조금액 외 추가 지원 없음(자부담)**
	태양열	800천원/개소	**400천원/개소**	
	지열	1,300천원/개소	**650천원/개소**	
	연료전지	500천원/개소	**250천원/개소**	

- 참여기업 등은 건물지원사업 표준 설치계약서에 명시한 REMS연계비용(보조금과 설치자분담비용) 중 RTU비용과 통신비는 계약 체결한 모니터링 업체에 지급하여야 함

- 참여기업은 “하자이행보증증권” 발행 시 신재생에너지설비 및 연계시스템 설치·연계비(기준단가) 전체를 포함한 사업비에 대해 증권을 발행하여야 하며, 해당 설비의 연계 여부 및 하자보증에 관한 사항은 설치확인 시 확인(REMS에서 발급한 CID 코드를 설치확인 신청 시 입력 필수)

※ 참여기업은 계약한 모니터링 업체와 유지관리가 5년간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 요망

4. 지원 절차



5. 사업 접수

○ 접수기간 : 2022. 05. 9(월) ~ 06. 3(금) (매일 10:00~17:00까지, 토,일,공휴일 제외)

○ 접 수 처 : 신·재생에너지센터 전자민원/건물지원/계약의뢰, 사업신청

※ 신청인 및 참여기업은 본 공고 본문, 신청 요령[별첨 1] 및 유의사항[별첨2], 제출서류[별첨 3]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유의해야 할 사항을 소홀히 하거나 미확인으로 인해 민원, 상호 분쟁 등이 발생될 경우 사업 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이로 인해 발생된 불이익은 사업 신청자 및 참여기업의 귀책 사유이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 필요

6. 평가기준

○ 계량 평가항목(10점)

<table>
<tr><th>평가 항목</th><th>평가 기준</th><th>배점</th></tr>
<tr><td>1. 착공시기
(사업선정일 기준)</td><td><table><tr><th>구 분</th><th>점수</th></tr><tr><td>1개월 이내</td><td>5</td></tr><tr><td>1개월 초과 ~ 2개월 이내</td><td>3</td></tr><tr><td>2개월 초과 ~ 3개월 이내</td><td>1</td></tr><tr><td>3개월 초과</td><td>-1</td></tr></table></td><td>-1~5</td></tr>
<tr><td>2. 완료기한</td><td><table><tr><th>에너지원</th><th>기준</th></tr><tr><td>태양광, 집광채광</td><td>90일이내</td></tr><tr><td>태양열, 연료전지, 풍력</td><td>120일이내</td></tr><tr><td>BIPV</td><td>210일 이내</td></tr><tr><td>지열, 기타</td><td>150일이내</td></tr></table></td><td>3</td></tr>
<tr><td>3.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td><td>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서 제출
* 공고상 접수마감 기한까지 인증취득이 완료된 사업에 한하여 인정</td><td>2</td></tr>
<tr><td rowspan="2">4. 사회복지시설, 다중이용시설, 학교, 산업단지
(추가 가점)</td><td>- 사회복지시설 증빙 서류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신청인일 경우 해당
- 다중이용시설 증빙 서류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시설 중 본 공고 “2.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 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인 경우</td><td>2</td></tr>
<tr><td>- 산업단지 입주 증빙 서류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8조에 의해 지정된 산업단지(국가산업단지, 일반 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입주기업 중 본 공고 “2.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 산업단지 입주계약확인서(www.factoryon.go.kr을 통해 발급가능)</td><td>1</td></tr>
<tr><td colspan="2">합 계</td><td>10</td></tr>
</table>

○ 비계량 평가항목(90점)

평가 항목	평가 기준	배점
1. 사업 적합성	① 사업목적의 적합성 ② 설치 입지조건의 적정성 ③ 사업 기대효과 등	20
2. 설치계획서 적정성	① 설치 에너지원의 적절성 ② 설비용량 산정방법 적절성 등	20
3. 사업비용 적정성	① 투자비 회수기간(경제성)의 적절성 ② 사업비 산정내역의 타당성 등	20
4. 참여기업 사업 수행 능력	① 참여기업 사업 추진력, 사업 충실도(제출서류, 사업 준비 등) ② 보유 기술력, 시공실적, 기술개발 참여 등	10
5.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운영	① 적용설비 구성제품의 품질 및 설비구성의 적합성 ② 모니터링 운영 방법(REMS 연계 및 유지관리) ③ 설비 유지·보수 및 사후관리 방법 등	20
합 계		90

※ 평가결과 평점이 70점 미만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7. 의무부여 및 지원 제한 등

□ 참여기업

○ 당해 연도 설치한 설비는 향후 의무사후관리 기간(3~5년)에 따라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센터에 보고하여야 함

※ 센터 보고는 시스템으로 등록 완료된 건에 한하며, 미보고의 경우 참여기업 선정 시 페널티 부여

○ '22년 이내 설치 완료를 원칙으로 하되, 센터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 예외

○ 허위로 사업을 신청*한 경우에는 사업취소 및 사업참여 제한** 등 조치

* 표준계약서 허위도장 날인, 제출서류 위.변조, 이면계약서 작성, 사업신청 및 사업승인 이전 설비설치, 보급사업 관련 법규·공고·규정 미 준수 등

** 최종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계약서 등 사업신청 관련 제반서류는 사업 신청 전 신청자, 참여기업, 모니터링 업체 상호 확인이 되어야 하며, 미확인 등에 따른 상호분쟁 등 민원 발생 시 사업 취소 사유에 해당

○ 설치확인 시 동일 건에 대하여 부적합 3회 판정을 받을 경우, 해당 참여기업은 사업 참여제한 조치

○ 센터 지침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원별 시공기준" 및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지자체 조례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준수 시 보조금 지급 보류 또는 사업 취소, 보조금 환수, 관련 법적 조치 등의 사유가 될 수 있음

*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원별 시공기준 등 사업 수행도중 지침이 개정되는 경우 최신 지침에 따라 설비를 설치해야 함

○ 설비의 안전시공 강화를 위해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작성한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함

□ 신청자

○ 사업승인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임의 변경하거나 포기·취소된 사업의 신청자는 당해 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 범위를 초과하는 용량의 사업은 신청 불가. 단, 최대 지원 범위의 110%이내 설치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보조금은 최대 지원 용량까지만 지원 함

○ 전기안전공사 정기점검 대상 설비의 경우 설비폐기 시 까지 정기 점검을 받아야 함

8. 기타사항

○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와 센터 지침(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상세 문의
-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https://www.knrec.or.kr) 공지사항 참조
- 문의처 : 1855 - 3020 (신재생에너지 종합지원콜센터)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종합지원센터(지역본부, [별첨 10] 참조)

[별첨 1] 건물지원사업 신청요령 및 지원 절차
[별첨 2] 건물지원사업 신청 및 설비설치 시 유의사항
[별첨 3] 건물지원사업 진행 관련 제출서류
<첨부서류> 사업신청 또는 변경 시 제출 필요
(양식 1) 표준설치계약서(개인정보이용동의서 포함)
(양식 2) 건물지원사업 지원신청서
(양식 3) 건물지원사업 설비 설치계획서
(양식 4) 건물지원사업 안내 및 확인서(공통)
(양식 4-1) 태양광 설비 설치 관련 신청자 확인서
(양식 4-2) 태양열 설비 설치 관련 신청자 확인서
(양식 4-3) 지열 설비 설치 관련 신청자 확인서
(양식 4-4) 연료전지 설비 설치 관련 신청자 확인서

(양식 4-5) 소형풍력 설비 설치 관련 신청자 확인서
(양식 5) 건물지원사업 사업 변경 동의서(해당시 활용)
(양식 6) 건물지원사업 사업 포기 동의서(해당시 활용)

[별첨 4] 정부 보조금 지급 동의서(양식)
[별첨 5] 설치완료 확인서(양식)
[별첨 6] 선급금 지급 동의서(양식)
[별첨 7] 시범적 사업 안내
[별첨 8] 시범적 사업 성과보고서(양식)
[별첨 9] R&D 기술개발 과제 개요서
[별첨 10] 건물지원사업 관련 공단 지역본부 종합지원센터 연락처

[별첨 1]

건물지원사업 신청요령 및 지원 절차

(1) 신청자는 소유한 건물 및 시설의 특성에 적합하고, 설치효과가 우수한 신재생에너지원을 결정 함

(2) 신청자는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함) 홈페이지에 공지된 해당 에너지원의 건물지원사업 참여기업 중 사업의 적합성, 설비형식, 설치모델, 설치비용, 제품 및 참여기업의 신뢰성, 경제적 효과, 하자보증 등 관련 사항을 충분히 협의한 후 1개의 참여기업을 선정하여야 함

- 신재생에너지설비설치 관련 규정 및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연계, 사용전 검사,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등 전기사업법 사업 관련 규정을 사전에 숙지하여, 계획 수립 및 비용 산정 시 반영하여야 함

※ 저압인 자가용 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 시 사용전검사 신청을 하여야 하며, 설비용량 20kW초과 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임

- **특히 행정기관 인·허가, 설비 설치에 따른 소음, 일조(조망)권, 옥상 기계실 등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 검토 필요**

※ 신청자와 참여기업의 계약에 따른 양자 간의 피해보상 및 민형사상의 책임은 정부 및 센터와 관련 없음

(3) 신청자는 선정한 참여기업과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고, 계약을 체결 함

- 필요서류 :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등기 등록*된 건축물대장(신축건물은 건축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업자등록증(해당 신청자),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설치계획서, 현장사진,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서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서(선택), 사회복지법인 증빙(선택) 등

* 창고, 컨테이너 등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거나 미등기된 구조물, 건축물·부속시설물의 경우 보조금 지원이 불가하며 건축물대장 기재 및 등기 등록 후 신청 필수

(4) 신청 및 설치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신청자 명의는 건축물등록대장 상 소유주임

※ 소유주가 법인(또는 단체)인 경우 : 법인 또는 법인 소속 담당자가 신청 가능 (담당자가 신청 시 법인 인감증명서 및 담당자의 재직증명서, 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추가 필요)

※ 소유주가 개인인 경우 : 소유주 본인 명의로 신청 가능하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증빙(개인인감증명서 불가)

- 현장사진 및 약도 : 인터넷 포털사이트 지도 검색을 활용하여 지도에 주소가 표기될 수 있도록 작성

- 주소는 도로명 주소 기준으로 신청(지번 주소 기준 아님, 지번 주소 별도 표기)

- 태양광 일반분야와 축사 및 축산시설 분야의 설치 가능 최대 용량은 200kW로, 한전 계약전력을 초과할 수 없으며, 향후 상계거래 신청(상계거래 관련 사항은 한전에 문의) 및 경제성 등을 감안하여 설치 규모 산정 필요

※ 한전 계약전력이 30kW인 경우 최대 30kW까지, 250kW이면 최대 200kW까지 신청 가능

- 보조금은 '설치용량' × '보조금 단가'로 작성하며, 만원단위 미만 절사

(5) 센터 홈페이지(https://www.knrec.or.kr) 전자민원에서 신청기간 내에 온라인 신청(오프라인 접수 불가)

(6) 신청된 사업신청서를 센터에서 검토·평가하여 지원 대상 선정 이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설비 착공 가능

※ 사업신청서 검토 항목 : 지원 대상 여부, 총사업비, 설치환경, 설비용량, 사업효과, 사업기간, 주요설비 사양 등(※사업계획서 내용으로 평가 진행)

※ 사업별 최종 보조금 지원액은 사업신청서 검토 및 평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총 사업비 4억원 이상 사업의 경우 현장 발표 후 전문위원회 심의·평가를 거쳐야 함

※ 센터는 승인된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비 집행내역 등을 포함한 사후관리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신청자 및 참여기업은 현장점검 및 자료제출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협조 하여야 함(실태조사 결과는 향후 참여기업 평가에 활용될 수 있음)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착공시기와 완료기한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함

(7) 에너지원별 설치 완료기한 내에 설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기한 미 준수 시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

※ 에너지원별 설치 완료기한 시작일과 완료기한은 [별첨 2] 에너지원별 설치 완료기한을 참조

(8) 설비 설치공사 완료 후 설치확인 신청에 의한 센터의 현장방문을 통해

시공기준에 의거 설치 상태를 확인하고, 적합 판정 시 관련 절차에 따라 참여기업에 정부 보조금을 지급 함

(9) 신청자는 설비 설치공사 완료 후 설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확인·점검 및 유지·보수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이상 발견 시 계약한 참여기업에게 A/S를 받아야 함. 아울러 **설비 설치완료 이후 발생하는 문제(하자·보수·비용발생 등)는 신청자 및 참여기업 간의 협의사안**이며, **정부 및 센터는 상호 분쟁에 대하여 관여할 수 없음**

(10) 신청자는 신청자 책임 하에 참여기업을 선정하고, 신청 대상 설비의 설치장소·설치조건 등에 따라 설비 성능이 달라지기 때문에 설비성능 및 적정 용량·경제성 검토 등 사업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정부 및 센터가 설비의 성능을 보장하지 않음

(11)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관련 정보는 일반에게 공개될 수 있음. 신청자 또는 참여기업이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 사업 신청서 제출 시 반드시 공개 금지를 요청하여야 함

(12) 센터는 **신청자와 참여기업 간의 문제 발생 등**으로 설치계약 내용이 정상적으로 **이행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신청(지원)사업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음**

(13) **정부 및 센터**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따른 보조금만 지원**하며, “신청자”와 “참여기업” 간에 발생하는 문제(설비 성능 보장, A/S 및 비용 발생, 채권·채무 관계 등), 관련 법규 미준수(행정기관 인·허가 등)에 따른 문제, 소음발생 및 일조권·조망권, 이웃 간 분쟁 등 설비 설치에 따른 문제(문제제기 등), 센터 직권 사업취소 등에 따른 **민·형사상 법적 책임은 “신청자”와 “참여기업”간 상호 계약사항으로, 정부 및 센터는 책임이 없으므로 사업 참여 전,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여야 함**

(14) 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는 비공개 처리 후 제출하여야 함

(15) 사업계획서에 작성한 착공시기, 완료기한은 ‘참여기업 모집 공고’ 평가항목에 반영되니 반드시 준수할 것

[별첨 2]

건물지원사업 신청 및 설비설치 시 유의사항

□ 공통적용

○ 당해 사업공고 이후 **설치가 완료된 설비에 한하여 지원**함

※사업신청 이전에 설비 설치를 시작한 사업으로 확인될 경우 사업이 취소 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관리하는 건물·시설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단, 기숙사는 지원 대상에 포함)

○ 선정된 참여기업의 소유건물에 설치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 및 참여기업은 관련 법령, 고시, 센터의 「지침」 및 「사업지원 공고」 등의 내용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 보류, 환수 또는 사업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

○ 사업 진행 시, 제출 서류의 모든 기재사항은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 착오, 누락, 오기 등은 사업 취소 사유에 해당됨

○ 신청자로부터 정부보조금 지급에 관한 동의를 받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기업에게 직접 지급 함. 단, 그 특별한 사유는 센터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별첨 4] 정부 보조금 지급 동의서 참조)

○ **인증제품 사용의무화**

- 최신 규정, 센터지침 개정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공고 이전, 최신 개정 지침 기준(시공기준 등)

- 센터에 등록한 신재생에너지 **인증제품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인증기준 등이 없을 경우 KOLAS 인정 시험기관(해당 시험분야)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로 대체 가능**, 이를 변경할 시에는 소비자 동의서 등의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센터에 변경요청 및 승인을 받아야 함. 다만, KOLAS 인정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지정한 성능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도 제출 가능** 함

- 태양광 : **모듈 및 인버터**

 * 건물일체형 태양광시스템(BIPV)의 경우, 인증모델과 유사한 형태(태양전지의 종류와 크기가 동일한 형태)의 모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에 관한 규정의 발전성능시험 결과가 포함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함

- 태 양 열 : **집열기 및 자연순환식 태양열 온수기**

- 지　　열 : **열펌프 유니트**

- 연료전지 : **연료전지 시스템**

- 풍　　력 : **풍력 발전 시스템**

○ 사업승인 후 기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주요품목 변경 등의 변경은 센터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반 시 사업취소 및 보조금 환수 처리(설비 변경 신청은 최대 2회로 제한)

○ **에너지원별 설치 완료기한* 내 설치를 완료**하고, 설치확인 신청 시 신청자로부터 [별첨 4] 정부 보조금 지급 동의서 및 [별첨 5] 설치완료 확인서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함(신청자 확인 필수)

*** 설치 완료기한 미 준수 시, 사업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

<에너지원별 설치 완료기한>

구 분	설치 완료기한
태양광, 집광채광	선정일로부터 90일 이내
태양열, 연료전지, 풍력	선정일로부터 120일 이내
지열	지열이용검토서승인일로부터 150일 이내
BIPV	선정일로부터 210일 이내
기타	150일이내

주) 1. 설치 완료기한 시작일은 사업 선정일 기준(지열의 경우 지열이용 검토 승인일 기준)으로 하며, 기간은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산정
2. 사업기간의 정식 연장은 **1회(90일)로 한정** 함

○ 선급금 신청 시, 선급금이행보증서 및 [별첨 6] 선급금 지급 동의서(신청자) 첨부하여야 함

- 선급금을 지급받은 사업이 당해년도 내에 완료되지 않을 경우, 선급금 이행보증보험증권을 통해 환수 조치 함

○ 사업 추진 시, 행정기관의 인·허가(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등)와 민원(소음발생,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 등)발생 등으로 30일 이내 착공이 어려울 경우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 됨

- 허위로 서류제출 시, 사업취소 및 참여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음

○ 설비 설치 시, 센터 지침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원별 시공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공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보류 또는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 됨

○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서류 제출**

- 시공 완료 후, 신청 사업별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 보험 가입서류 제출 및 이를 **신청자에게 별도로 제공**하여야 함

○ **하자이행 보증 의무 및 보증서 제출**

-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 등이 기재된 **하자이행 보증서를 신청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설치확인 신청 시 센터에 별도 제출하여야 함

 * 하자보수보증 요율은 총사업비의 10%이상(단, 기업신용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인 경우 5%이상), 보증기간은 참여기업 참여제안 시 제시한 기간으로 설정(3년~5년)하여야 하며, 위반 시 선정 취소 조치, **단, 총사업비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비 및 연계비용을 모두 포함함.**

- 참여기업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소유주(신청자)에게 의무 하자이행 보증기간(3~5년)동안 무상으로 성실하게 하자보수를 하여야 함(미이행의 경우, 참여기업 선정시 페널티 부여)

- 설비 설치 완료 후 센터의 현장 확인 시, 부적합 사항 발생에 따른 보수기간이 필요한 경우 하자보증기간은 현장확인 재신청 시점일을 기준으로 변경하여야 함

 * 예시) 현장확인 신청 시 하자보증기간 : 2022.03.07 ~ 2025.03.06
 재신청 60일 소요 시 하자보증기간 : 2022.05.06 ~ 2025.05.05

○ **사후관리 의무이행**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건물지원사업 참여기업은 당해 연도 설치한 설비에 대하여 **3년 동안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센터에 보고하여야 함(미보고의 경우, 참여기업 선정시 페널티 부여)

 * 매년 의무 사후관리 기간에 에너지원별 가동에 따른 성과를 설치 전·후의 운영실적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공단과 연계한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의무화**

- 신청자 및 참여기업, 모니터링 업체는 공단의 통합모니터링시스템(REMS)과 연계하도록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함

○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호를 위한 기계실 신축 시, 건축법 등 관련법 준수

- 주요설비(축열조, 지열히트펌프 등)가 옥외에 설치될 경우 **설비보호를 위해 기계실 내에 설치**되어야 하며, **설비 및 기계실 건축 시 관련법을 반드시 준수(신고, 허가 등)하여야 함**

○ 참여기업은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사업**을 **타 전문기업에 양도할 수 없으며** 양도 시, **센터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태양광 분야

○ 전력요금 및 상계처리 등 안내

- 부가세 부과 및 별도 계량기 설치 등 관련 내용은 한국전력 담당자에게 문의(국번없이 123)

□ 태양열 분야

○ 태양열 설비는 급탕사용을 주 용도로 하여야 함

○ 태양열 집열기는 인증제품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증마크 및 인증표기 사항을 포함하여 부착하여야 함

○ 태양열 설비 이외의 난방설비(가스·전기보일러, 심야전기보일러 등)는 지원대상이 아님

□ 지열 분야

○ 사업선정 이후 접수된 지열이용검토서 검토완료 후 최종 승인 함

- 지열이용검토서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최종 사업계획서 제출

- 지열이용검토서는 **사업 평가·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지열이용검토서 : 지열사업 착수 전 해당 천공 예정지 시험천공 후 지질특성, 열전도도 등의 자료를 조사한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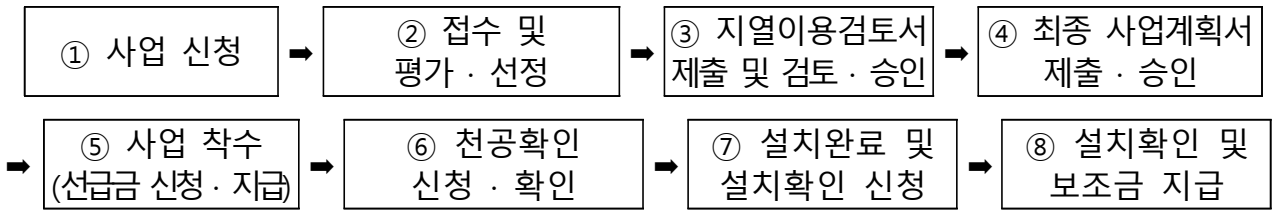
○ 지열이용검토서 검토 후 사업수행 불가로 판정된 사업은 지원 불가

○ 지열이용검토서 제출내용 및 양식, 열전도도 확인 가능 기관, 세부 수행 지침 등은 '지열설비의 이용검토서 작성 및 검토기준'에 따름

○ 지열설비 이외의 냉·난방설비(가스·전기(온수)보일러, 에어컨 등)는 지원 대상이 아님

○ 난방분야에 한하여 지원하며, 냉방분야 설치 시 추가 비용은 신청자 부담 임

< 지열분야 사업수행 절차 >



□ 연료전지 분야

○ 신재생에너지법상 인증 및 가스안전법상의 검사기준 충족

○ 연료전지에서 발생하는 온수는 건물 내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함

○ 신재생에너지 전기요금 할인을 위한 설비추가는 신청자와 참여기업이 협의하여 결정

- 별도 계량기 설치 등 관련 내용은 한국전력 담당자에게 문의(국번없이 123)

○ 설비 가동을 위한 가스비용을 고려하여 부하 시간대(경부하, 중간부하, 최대부하) 별 가동계획을 수립하는 등 운전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설치 후 가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소형풍력 분야

○ 풍력 설치 시 다음의 사항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함

- 풍력기 설치장소 주변 이격거리를 50m이상으로 하여 소음, 진동 등의 민원 발생 방지
- 이격 거리에 포함된 모든 주택, 건물 소유주 동의서 제출(필수)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기상청 등의 공식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하여, 연평균 4.5m/s이상의 풍속이 확인되는 지역에만 설치 가능

※ 소형풍력을 제외한 풍력 분야는 평가위원회에서 별도 심의하여 지원 조건 및 지원 여부를 결정 함

[별첨 3]

건물지원사업 진행 관련 제출서류

□ 신청자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필수 포함내용

□ 사업 신청 시

① 설치 장소 현장사진 및 약도 각 1부

② 신청자(기관) 사업자등록증(해당 신청자) 1부

*마을회관의 경우 이장 재직증명서 제출

③ 설치 대상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등기 등록된 건축물대장 1부
(신축건물은 건축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④ 설비 설치계획서 1부

⑤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개인) 또는 법인인감증명서(기관) 1부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법인인감 확인) 등 증빙 첨부

⑥ 신청자 확인서(공통, 에너지원별) 각 1부

⑦ 축산업 등록증(축사)

⑧ 에너지원별 추가 제출서류

구분	설치 계획서에 포함 되어야 하는 서류(필수)
태양광	한전 전기사용량(신청 시점 직전 월까지 1년) 증빙자료 ※계약 종별, 계약전력 등 내용 포함
태양열	온수 및 난방부하계산서, 설계도
풍력	주민 동의서(필요시) 및 풍황자원 조사서(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기상청 등의 공식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하여야 함), 한전 전기사용량(신청 시점 직전 월까지 1년) 증빙자료
연료전지	한전 전기사용량(신청 시점 직전 월까지 1년) 증빙자료 ※계약 종별, 계약전력 등 내용 포함

⑨ 건축물효율등급 인증서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서(선택)

⑩ 사회복지시설, 다중이용시설 및 학교 증빙서류(선택)

⑪ 산업단지 입주 증빙서류(선택)

※ 시범적사업은 기술개발 결과 확인서, 기술이전 완료 증빙서(기술이전 경우)를 추가로 제출

□ 평가 선정 후

① 표준 설치계약서(개인정보이용 동의서 포함)

※ 연료전지의 경우 제조사-참여기업 A/S협약서 추가 제출

※ 지열의 경우 지열이용검토서 추가 제출(검토 후 최종 승인 및 선정)

② 건물지원사업 협약서

③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서

④ (사업변경내용 있을 시)사업변경동의서

○ **사업 신청자는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이어야 함
- 소유자가 개인일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서명확인용)
- 소유자가 기관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제출(날인확인용)
 *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법인인감 확인) 등 증빙 첨부

○ "건물등기부등본"은 "토지대장"으로 갈음할 수 없음
- 소유자 지분 분할 시, 최대 지분 소유자를 사업 신청자로 인정 함
 ※ 소유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공동 소유자의 신청 동의서 필수 제출
- **모든 증빙서류(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는 전체 페이지를 첨부**하여야 함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의 주소와 **실제 설치장소 및 온라인 신청서의 설치장소는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

○ 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상 이상이 없어야 보조금 지급이 가능 함

○ **하자이행보증서**에는 신청자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참여제안 시 **제시한 기간(3~5년)을 반드시 준수** 하여야 함
- 정부보조금과 신청자 부담금을 모두 합산한 총사업비 기준으로 발행 함

○ 선급금 신청 시, 선급금이행보증서 및 [별첨 6] 선급금 지급 동의서(신청자)를 첨부하여야 함

□ 참여기업이 신청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서류(필수)

○ **(신청 시)**
- 2022년도 건물지원사업 공고문 1부
- 건물지원사업 안내 및 확인서, 원별 신청자 확인서 각 1부

○ **(사업선정 시)** 표준 계약서 및 설치계획서 각 1부

○ **(설치확인 시)**
- 정부 보조금 지급 동의서 및 설치완료 확인서 각 1부
- 하자이행보증증권,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서류 각 1부
- 설치확인서 1부

□ 허위서류 제출에 따른 조치사항

○ 지원신청서(설치계획서 등 첨부서류 포함)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 평가 제외 및 사업취소 조치 함(입력자의 실수 불인정)

※ 허위서류 제출 시, 신청자 및 참여기업은 3년 이상의 사업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 됨

[양식 1]

건물지원사업 표준 설치계약서

(3쪽 중 제1쪽)

<table>
<tr><td rowspan="6">계 약
당사자</td><td rowspan="3">신청자</td><td rowspan="3"></td><td colspan="2">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td><td colspan="3"></td></tr>
<tr><td>주 소</td><td colspan="3"></td></tr>
<tr><td>연 락 처</td><td></td><td>F A X</td><td></td></tr>
<tr><td rowspan="3">참여
기업</td><td rowspan="3"></td><td>대 표 자</td><td></td><td>사업자등록번호</td><td></td></tr>
<tr><td>주 소</td><td colspan="3"></td></tr>
<tr><td>연 락 처</td><td></td><td>F A X</td><td></td></tr>
<tr><td rowspan="9">계 약
내 용</td><td>에너지원</td><td colspan="2"></td><td>설비타입</td><td></td><td>설치용량</td><td></td></tr>
<tr><td>공사명</td><td colspan="3"></td><td>사업비 총액(A+B)</td><td colspan="2">일금 천원</td></tr>
<tr><td>설치장소
주소</td><td colspan="3"></td><td rowspan="3">보조금(A)</td><td>소계
(A=C+D)</td><td>일금 천원</td></tr>
<tr><td rowspan="2">설치기간</td><td colspan="3" rowspan="2">년 월 일 ~ 년 월 일</td><td>열원설비
(C)</td><td>일금 천원
(단가: 천원/단위용량)
* 만단위 미만 절사</td></tr>
<tr><td>REMS연계
(D)</td><td>일금 천원</td></tr>
<tr><td>예금주
(참여기업)</td><td></td><td>은행</td><td></td><td rowspan="3">설치자
분담비용
(B)</td><td>소계
(B=E+F)</td><td>일금 천원</td></tr>
<tr><td rowspan="2">계좌번호</td><td colspan="3" rowspan="2"></td><td>열원설비
(E)</td><td>일금 천원
(계약금: 천원)</td></tr>
<tr><td>REMS연계
(F)</td><td>일금 천원
(계약금: 천원)</td></tr>
<tr><td>본 문
조 항</td><td colspan="7">제1조(사전안내) ① “참여기업”은 “신청자”와의 계약 체결 전, 현장확인 등을 통해 설치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신청자”에게 지원사업 공고, 지원설비, 설치장소, 사업비, 설비 설치·관리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②“신청자”는 “참여기업”에게 충분한 안내를 받은 후, “건물지원사업 안내 및 확인서”에 날인(서명)함으로써 해당 사실을 인지하였음을 확인한다
제2조 (계약금 지급) ①“신청자”는 필요한 경우 “신청자”의 부담범위에서 일정 금액의 계약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신청자”가 계약금을 지급할 시에는 반드시 예금주가 “참여기업”의 상호로 기재되어 있는 상기의 통장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③“신청자”는 계약금을 지급할 경우 계약 후 1주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참여기업”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3조 (사업의 준공) ①“참여기업”은 설치 기간내에 설치를 완료하고 “신청자”로부터 서명받은 **설치완료확인서 및 정부보조금 지급 동의서**를 센터에 제출한 후 센터에 설치확인을 요청한다.
제4조 (설치자 분담비용) ①**“신청자”는 “참여기업”이 설치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였을 경우, “참여기업”의 설치자 분담비용 지급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설치자 분담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예금주가 “참여기업”의 상호로 기재되어 있는 상기의 통장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②“신청자”는 정부보조금 지급을 위해 “참여기업”과 협의하여 “센터”에 “보조금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센터”는 설치확인 완료를 확인하고 “신청자”가 센터에 보조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치한 “참여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단, 그 특별한 사유는 센터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신청자”는 공사가 사업기간 이전에 완료된 경우, 설치자 분담비용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지급할 수 있다.</td></tr>
</table>

본 문 조 항 (계속)	제4조 (계약의 해약) ①“신청자”와 “참여기업”은 상호간에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 각각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센터”에 해당 내용을 고지하여, 해당 사유로 인정받은 경우,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쌍방간 합의에 의해 “센터”에 사업포기 동의 및 신청을 한 경우 2. 계약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업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사업목표 달성이 극히 곤란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3. 기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불가능 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③본 계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센터”는 해당 사업에 대해 취소·포기 처리를 하고, “참여기업”은 기수령한 사업비가 있을 시 본 사업에 사용된 사업비를 증빙하고 잔액은 “신청자”에게 즉시 반환한다. 단, 정부 보조금(선급금 등)의 경우, 지급받은 전액을 “센터”로 반환한다. 제5조 (보조금의 환수) “참여기업”이 설치한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신청자”가 “센터”의 승인없이 5년 이내에 이전하거나 폐기처분한 경우에는 “센터”는 정부 보조금을 환수 할 수 있다. 제6조 (해석) 본계약서 내용상 해석은 건물지원 사업공고, “센터”에서 제시하는 기준 및 규정에 적합할 경우 “신청자”의 해석에 따른다. 제7조 (보관)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신청자”, “참여기업”이 각각 1부씩을 보관하여야 하며, “신청자”가 “센터”에 신청·접수 시 제출하는 서류관련 업무를 “참여기업”에게 위임하였을 경우, “참여기업”은 “센터”에 최종 제출된 서류를 “신청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계약 내용이 틀림없음을 상호 확인하여야 한다.
특 약 조 항	제1조 (이행보증 및 하자보증) ①**“참여기업”은 “신청자”에게 준공서류 제출시 사업종료일로부터 ()년간 하자보수를 책임지는 내용의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하자보수보증 요율은 보조금 지원총액과 설치자 분담비용을 합한 금액의 10%.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B^+이상인 경우는 5%)**를** 제출하고, **사본 1부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참여기업”이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경우 “참여기업”은 “신청인”에게 **생산물책임보험 증서를 제출하고, 사본 1부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신청자”는 보급사업으로 획득한 시설물을 성실히 관리하여야하며, “참여기업”의 하자이행 보증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발생한 설비의 하자를 수리할 경우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 **“참여기업”**은 “신청자” 및 “설비 설치 계획서”상 “모니터링 업체”와 **상호 협의**하여 “센터”의 **통합모니터링시스템 연계 및 유지관리가 설치완료 이후 5년간 지속**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조 (사용자 교육) “참여기업”은 “신청자”가 해당시설 및 장비의 운용과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용자 사전교육과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 (지체상금율) “참여기업”이 “신청자”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이 계약후 설치기간내 설치를 완료치 못할 경우에 지체일 하루당 설치비용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계약효력) 본 계약서는 센터의 사업승인 시 쌍방이 정한 바에 따라 계약서의 효력을 가진다. * 첨 부 : 설비 설치 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참여기업 :** [직인]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이라 함)에서 실시하는 건물지원사업 신청·접수 시 수집하게 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이에 센터는 아래 내용과 같이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사업 홈페이지(센터)를 통해 건물지원사업 신청 및 선정, 설비관리, 사후관리 등 서비스 이용 등을 위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소비자는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건물지원사업 신청·접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센터는 해당 업무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해진 목적 외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수집 목적 등이 변경될 경우 소비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센터는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이에 대한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건물지원사업 홈페이지 회원가입 관련 정보(E-mail, PW), 사업신청 관련 자료(신청서, 계약서, 건축물대장 등에 적힌 기본정보, 금융정보 등), 한국전력공사 등록 고객번호 및 전력관련 정보(월별 전기사용량, 요금, 전력 역송량), 통합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해 획득한 신재생에너지 설비관련 운영 현황(발전량 등) 정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센터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가. 신청자 관리 및 사업현황관리
- 가입의사 및 가입 사실 확인
- 본인확인 및 해당 업무 운영을 위한 서비스 제공(신청 및 선정, 설비관리, 사후관리 등 사업 현황 관리)
- 고지사항 전달 및 민원처리

나. 기타 원활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정보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가. 보존근거 : 가입 및 서비스 정보 제공

나. 보존기간 : 30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건물지원사업 참여 신청·접수 시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실시하는 건물지원사업의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신·재생에너지센터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은 건물지원사업에 적용됩니다.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구 분	동의여부	
필수항목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22년 00월 00일

신 청 인 : (인)

[양식 2]

건물지원사업 지원신청서

사 업 구 분	*(건물지원사업) 또는 (시범적 사업) 중 택일*		
신청자(기관)			
주 소	우편번호()		
연 락 처	전 화 : 팩 스 : E-mail : 이동전화 :		
신 청 분 야 (에 너 지 원)	*태양광*	설비타입	*BIPV*
예 상 사 업 비 (통신연계비 포함)	총사업비: 천원/ 보조: 천원/ 자부담: 천원 * *정부보조금(열원설비)은 용량 × 보조단가 적용, 만단위 미만 절사*		
설 치 규 모 (소수점이하 적용)	(태양광·지열·연료전지) : ㎾/(태양열) : ㎡/기타() : * *해당열원 표기 후, 용량 기입, 태양열, 지열의 경우 냉난방, 급탕 용량 구분 기입*		
계 약 전 력 량	㎾ * *한전 계약전력량 기재, 한전 계약종합정보내역 증빙필요, 설치용량은 계약전력량 이하 지원가능*		
참 여 기 업	기업명: 담당자 : 전화 :		
R&D 소재·부품 공 급 기 업	기업명: 담당자 : 전화 : * *시범적 사업만 해당(기술개발 소재·부품을 제공한 신재생에너지 R&D과제 수행기업)*		
모니터링 업체 (RTU 사업자)	기업명: 담당자 : 전화 :		
설 치 장 소	*(신청자 주소와 다를 경우 주소 및 해당 건물명 기재, 도로명주소 기재)*		
활 용 목 적			

위와 같이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에 따른 정부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참여(주관)기업 : (직인)

모니터링 업체 : (직인)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귀하

[첨부서류]

1. 설치 예정장소 현장사진 및 약도 각 1부
 * 약도는 해당 자료 상 설치주소지 확인이 가능하여야함.
2. 신청기관 사업자등록증(해당 신청자) 1부
3. 법인인감증명서(기관)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개인) 1부
 * 사용인감 활용 시, 사용인감계(법인인감 확인) 등 증빙 첨부 요망
4.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허가서) 1부
 * 각 해당 서류는 전체 페이지 제출 필요(일부 제출 불가)
5. 건물지원사업 설비 설치 계획서 1부

[양식 3]

건물지원사업 설비 설치 계획서

1. 사업 개요

사 업 구 분	*(건물지원사업) 또는 (시범적 사업) 중 택일*		
신청자(기관)명			
주 소	우편번호()		
신청자연락처	전 화 : 팩 스 : E-mail : 이동전화 :		
설 치 장 소	*(신청자 주소와 다를 경우 주소 및 해당 건물명 기재, 도로명 주소 기입)*		
에 너 지 원	*태양광*	설비타입 (시스템방식 포함)	*BIPV*
예 상 사 업 비 (통신연계비 포함)	총사업비: 천원/ 보조: 천원/ 자부담: 천원 ** 정부보조금(열원설비)은 용량 × 보조단가 적용, 만단위 미만 절사*		
설 치 용 량 (소수점이하 적용)	(태양광·지열·연료전지) : ㎾/(태양열) : ㎡/기타() : ** 해당열원 표기 후, 용량 기입, 태양열, 지열의 경우 냉난방, 급탕 용량 구분 기입*		
계 약 전 력 량	㎾ ** 한전 계약전력량 기재, 한전 계약종합정보내역 증빙필요, 설치용량은 계약전력량 이하 지원가능*		
참 여 기 업	기업명: 담당자 : 전화 :		
R&D 소재·부품 공 급 기 업	기업명: 담당자 : 전화 : ** 시범적 사업만 해당(기술개발 소재·부품을 제공한 신재생에너지 R&D과제 수행기업)*		
모니터링 업체 (RTU 사업자)	기업명: 담당자 : 전화 :		
사 업 기 간			
활 용 목 적			
설치장소사진			

주) 설치 용량의 용량단위는 태양광 및 지열의 경우에는 ㎾, 태양열 및 집광채광의 경우에는 ㎡, 냉난방용량 및 급탕 용량 구분하여 기입(태양열, 지열분야 등)

2. 설치(예상)기간 및 사업일정표

가. 설치기간 :

나. 사업일정표

일 자	공정계획	사업진도율(%)	비 고

3. 총사업비

(단위 : 천원)

총사업비 (A+B)	보조금(A)		자부담(B)		보조금단가 (공고 기준)	
	열원설비	REMS연계 (유지비포함)	열원설비	REMS연계 (유지비포함)	열원설비	REMS연계 (유지비포함)

(작성 방법) 사업내용의 사업비 산출내역과 연동하여 기술

4. 자부담 방법(구체적으로 기술)

(작성 방법) 자부담금 조달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5. 신청자(기관) 현황 및 특성

(작성 방법) 기관현황(설립, 주요사업현황 등), 건물용도 및 특성 등 기술

6. 참여기업의 정부사업 및 기술개발사업 참여현황

(작성 방법) 참여기업의 정부사업 시공실적 및 기술개발내용 등 기술

7. 설치환경(조건) 및 시설용량 산정방법, 효과

가. 설치환경(조건)

(작성 방법) 해당 설비 설치시 문제없이 설치가능한지를 판단할수 있는 설치환경 기술

나. 시설용량 산정방법

- 시설용량 산정내용
- 건물 냉·난방 부하, 급탕부하 계산(태양열, 태양열냉난방, 지열분야 등)
- 전력사용량 자료(최소 1년치)
- 연료사용량 자료(최소 1년치)

다. 에너지절약 및 환경개선 기대효과(투자비회수기간 등)

(작성 방법) 산출근거 및 계산식 자세히 작성
연료전지의 경우 가스비용을 고려하여 부하 시간대(경부하, 중간부하, 최대부하) 별 연간 가동계획 수립 필수

라. 설비 모니터링 운영계획(모니터링 대상 설비)

(작성 방법) 통합모니터링시스템(REMS) 연계방안 및 향후 유지관리 계획(5년간) 포함하여 기술

8. 신청자 및 참여기업의 사후관리(설비사용) 방법

(작성 방법) 사후관리 매뉴얼에 기반한 사후관리 방법 기술

9. 설치장소의 풍황자원조사서(풍력해당)

10. 사업내용

가. 시스템 주요 제품사양

제품명	모델명	규격및 용량	수량	제조사	단가 (천원)	신재생에너지센터 인증번호	효율	비고
예) 모듈	AA	00W	0	BB	000	oo-ooo-o-oooo	00%	
예)인버터	CC	00kW	0	DD	000	oo-ooo-o-oooo	00%	

(작성 방법) 주요 제품사양은 모두 상세히 기술

※ 해당 설비는 센터에 등록한 신재생에너지 인증제품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인증기준 등이 없을 경우 KOLAS 인정 시험기관(해당 시험분야)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로 대체 가능, 이를 변경할 시에는 소비자 동의서 등의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센터에 변경요청 및 승인을 받아야 함. 다만, KOLAS 인정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지정한 성능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도 제출 가능 함

나. 사업비 산출내역

(작성 방법) 사업비내역을 총사업비 내역과 연동하여 목록별 자세히 기술

다. 설비의 주요구성 및 설계도

(작성 방법) 설치예정인 설비의 개략도, 상세도(P&ID)까지 모두 첨부
(BIPV)설비 개략도, 상세도 외 설치상세도면(연결부 포함) 첨부
(지중)열교환기 사양 및 설치도면 모두 첨부(지열분야)

라. 설치조감도

위와 같이 2022년도 건물지원사업 설비설치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2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참여기업 : (직인)

모니터링 업체 : (직인)

[양식 4]

건물지원사업 안내 및 확인서(공통)

건물지원사업 참여자(신청자, 참여기업)는 사업 공고 및 아래의 사항을 모두 확인·동의하며, 사업을 신청 합니다.

※ 확인 후 신청자 및 참여기업은 괄호 안에 "확인" 기재

*** 법인명으로 신청 시 괄호 안에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처리**

-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법인인감 확인) 등 증빙 첨부 요망

확 인 사 항	신청자	참여기업
○ 건물지원사업 공고의 모든 사항을 숙지·이해하였으며, 동의하에 본 사업 참여를 희망합니다.	(확인 또는 인)	(확인)
○ 건물지원사업은 신재생에너지설비(이하 '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국민에게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참여기업과 신청자간 이뤄지는 계약 관련 사항은 쌍방 간에 지켜야할 사항이므로 신청자 책임 하에 참여기업을 신중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또는 인)	(확인)
○ 참여기업은 신청자가 설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안내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신청자는 설비를 성실히 관리하여 관리 소홀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확인 또는 인)	(확인)
○ 설비(구조물 포함)의 A/S 주체는 참여기업이므로 신청자는 참여기업과 계약체결 시 업체의 무상 수리 보증기간 및 처리기준을 정해야 하며, 보증기간 이후에 발생되는 수리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확인 또는 인)	(확인)
○ 설비 설치로 인한 일조권·조망권 분쟁, 건물 구조안전 문제, 신축건물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각종 인·허가 관련 사항은 센터가 개입할 수 없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또는 인)	(확인)
○ 신청자 및 참여기업은 관련규정에 위배되는 부정한 방법(문서 위조 등)으로 사업신청 및 보조금 수령 시 보조금 환수, 보급사업 참여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확인 또는 인)	(확인)
○ 신청자는 설치확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설비를 양도·이전·폐기 할 경우 센터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확인 또는 인)	(확인)

1/2

건물지원 <태양광> 설치 관련 신청자 확인	※ 확인 후 신청자는 괄호 안에 "확인" 기재 * 법인명으로 신청시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처리
1.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용량이 적정 용량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확인 또는 인)
2. 건물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기업을 직접 선택하여 계약요청을 하였습니다.	(확인 또는 인)
3. 계약서, 설비설치계획서 등의 모든 제출서류에 대해 확인하였습니다.	(확인 또는 인)
4. 설치 관련 절차서, 일정 등에 대해 참여기업으로부터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확인 또는 인)
건물지원 <태양열> 설치 관련 신청자 확인	※ 확인 후 신청자는 괄호 안에 "확인" 기재 * 법인명으로 신청시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처리
1. '태양열'설비는 급탕을 주 용도로 사용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확인 또는 인)
2. 건물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기업을 직접 선택하여 계약요청을 하였습니다.	(확인 또는 인)
3. 계약서, 설비설치계획서 등의 모든 제출서류에 대해 확인하였습니다.	(확인 또는 인)
4. 설치 관련 절차서, 일정 등에 대해 참여기업으로부터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확인 또는 인)
건물지원 <지열> 설치 관련 신청자 확인	※ 확인 후 신청자는 괄호 안에 "확인" 기재 * 법인명으로 신청시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처리
1. '지열'설비의 안정적인 열원 확보를 위한 천공 깊이 준수에 대해 확인하였습니다.	(확인 또는 인)
2. 난방설비(가스/전기/심야전기보일러)는 지원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확인 또는 인)
3. 건물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기업을 직접 선택하여 계약요청을 하였습니다.	(확인 또는 인)
4. 계약서, 설비설치계획서 등의 모든 제출서류에 대해 확인하였습니다.	(확인 또는 인)
5. 설치 관련 절차서, 일정 등에 대해 참여기업으로부터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확인 또는 인)
건물지원 <연료전지> 설치 관련 신청자 확인	※ 확인 후 신청자는 괄호 안에 "확인" 기재 * 법인명으로 신청시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처리
1. 건물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기업을 직접 선택하여 계약요청을 하였습니다.	(확인 또는 인)
2. 계약서, 설비설치계획서 등의 모든 제출서류에 대해 확인하였습니다.	(확인 또는 인)
3. 설비 가동을 위한 가스비용 등 운전 경제성을 확인하였습니다.	(확인 또는 인)
4. 설치 관련 절차서, 일정 등에 대해 참여기업으로부터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확인 또는 인)
건물지원 <소형풍력> 설치 관련 신청자 확인	※ 확인 후 신청자는 괄호 안에 "확인" 기재 * 법인명으로 신청시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처리
1. 거주자(50m이내)들의 설치동의서 및 풍황자원조사서를 근거로 설비를 설치합니다.	(확인 또는 인)
2. 건물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기업을 직접 선택하여 계약요청을 하였습니다.	(확인 또는 인)
3. 계약서, 설비설치계획서 등의 모든 제출서류에 대해 확인하였습니다.	(확인 또는 인)
4. 설치 관련 절차서, 일정 등에 대해 참여기업으로부터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확인 또는 인)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참여기업 : (직인)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

[양식 4-1]

태양광 설비 설치 관련 신청자 확인서

건물에 적용되는 태양광 설비의 기본적인 특성 및 경제성 검토 등 설치 계획서 상의 내용을 참여기업과 충분히 협의 하였으며, 설비 설치로 인한 일조권·조망권 분쟁, 건물 구조안전 문제, 신축 건물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각종 인·허가 관련 사항은 센터가 개입할 수 없음을 참여기업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참여기업 : (직인)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

[양식 4-2]

태양열 설비 설치 관련 신청자 확인서

건물에 적용되는 태양열설비의 기본적인 특성 및 경제성 검토 등 설치 계획서 상의 내용을 참여기업과 충분히 협의 하였으며, 난방설비(가스·전기보일러, 심야전기보일러 등)는 지원대상이 아니며, 계약서, 설비설치 계획서 등 설비 설치와 관련한 서류 확인 및 A/S 처리사항을 참여기업(계약서상의 "참여기업")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참여기업 : (직인)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

[양식 4-3]

지열 설비 설치 관련 신청자 확인서

건물에 적용되는 지열 설비의 기본적인 특성 및 경제성 검토 등 설치 계획서 상의 내용을 참여기업과 충분히 협의 하였으며, 안정적 열원확보 및 설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천공 깊이를 준수하고, 기타 난방설비(가스·전기보일러, 심야전기보일러 등)는 지원대상이 아니며 계약서, 설비설치 계획서 등 관련 서류 확인 및 A/S 처리사항을 참여기업(계약서상의 "참여기업")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참여기업 : (직인)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

[양식 4-4]

연료전지 설비 설치 관련 신청자 확인서

건물에 적용되는 연료전지 설비의 기본적인 특성 및 경제성 검토 등 설치 계획서 상의 내용을 참여기업과 충분히 협의 하였으며, 계약서, 설비설치 계획서 등 설비 설치와 관련한 서류 확인 및 A/S 처리사항을 참여기업(계약서상의 “참여기업”)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참여기업 : (직인)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

[양식 4-5]

소형풍력 설비 설치 관련 신청자 확인서

건물용 풍력설비의 소음 및 진동 등의 민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장소 주변 50m이내의 거주자에게 **설치 동의서**를 받아야 함. 또한, 풍황 자원 조사서(기상청,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자료)를 근거로 풍속이 연평균 4.5m/s 이상 지역에 설치가 가능한 설비이며, 설비 설치와 관련한 서류, 향후 설비 설치의 진행사항 및 A/S 처리사항을 참여기업(계약서상의 "참여기업")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참여기업 : (직인)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

[양식 5]

건물지원사업 사업 변경 동의서

신청자와 참여기업은 다음과 같이 2022년 신재생에너지보급(건물지원) 사업 내용이 변경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 다 음 -

1. 변경전 사업 내용

사업명	건물지원사업(신청번호 : *12자리*)		
신청자(기관)		참여기업명	
설치장소			

에너지원	설치용량	정부보조금	자부담금	총 사업비

2. 변경 내용*(상세 기술 요망)*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3. 변경 사유 :

** 사유 불충분시 변경 미승인, 상세 사유 및 증빙 첨부 요망*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참여기업 : (직인)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

첨부서류 :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사업 사업계획서(변경) 1부

[양식 6]

건물지원사업 사업 포기 동의서

신청자는 참여기업과 다음과 같이 2022년 신재생에너지보급(건물지원) 사업 포기 신청을 하는데 동의하며, 포기 처리 이후 공고 상 동년 사업참여 불가 등 포기 건에 대한 내용확인 및 이에 대한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다 음 -

1. 사업 내용

사업명	건물지원사업(신청번호 : *12자리*)		
신청자(기관)		참여기업명	
설치장소			

에너지원	설치용량	정부보조금	자부담금	총 사업비

2. 포기 사유 :

* 사유 불충분시 미승인, 상세 사유 작성 요망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참여기업 : (직인)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

[별첨 4]

정부 보조금 지급 동의서

건물지원사업 신청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정상적인 설치완료를 다음과 같이 확인하며, 이에 정부 보조금이 참여기업에 지급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다 음 -

① 신청자(기관) : (연락처 :)

② 설치장소 :

③ 사 업 명 :

④ 기관담당자 :

⑤ 기타사항 :

(금액 : 원)

에너지원	설치용량	정부보조금	참여기업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

[별첨 5]

설치완료 확인서

건물지원사업 관련 해당 신청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정상적인 설치완료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 다 음 -

① 신청자(기관) : (연 락 처 :)

② 사 업 명 : (사업기간 :)

③ 에너지원 :

④ 설치장소 :

⑤ 참여기업 :

⑥ 확인사항

확인 사항	확인(인)
① 행정기관의 인·허가와 소음, 일조(조망)권, 옥상 기계실 등 민원사항은 참여기업과 충분히 검토하였으며, 이로 인한 피해보상 및 민·형사상의 책임은 정부 및 신재생에너지센터와 관련 없음을 확인 함	
② 건물지원사업의 보조금 지원 외에 신청자의 참여기업 선정, 시공설비(제품)와 시공 상태, 기대효과, 자부담금 등에 따른 사전·사후 피해와 그 보상 등 신청자와 참여기업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정부 및 신재생에너지센터는 민·형사상의 책임이 없음을 확인 함	
③ 설치 완료된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정상 가동됨을 확인하며, 건물 구조안전 등 설비 설치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참여기업과 충분한 검토 및 협의 결과 이상없음을 확인 함	
④ 건물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설비의 매뉴얼 수령 및 참여기업으로부터 설비 운전방법, 사후관리 요령 등 설비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교육 받음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

[별첨 6]

선급금 지급 동의서

사업명	건물지원사업		
신청자(기관)		에너지원	
설치장소			
참여기업			
사업비(원)	정부보조금(원)	자부담(원)	합계(원)
선급금 청구 금액(원)			

위 신청자 본인은 건물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선급금(보조금의 00%)을 참여기업에 선 지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동 사업이 중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신청자 또는 참여기업의 귀책사유 유무에 관계없이 센터가 청구하는 기 지급 선급금 원금 및 이자 등을 즉시 반환할 것을 신청자와 참여기업이 연대하여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참여기업 : **(직인)**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

[별첨 7]

시범적 사업 안내

1. 지원예산 : 10,000백만원

2. 지원대상

○ 국가가 지원한 신재생에너지 R&D과제 중 '17년부터 '22년 사업공고 이전일까지 성공적으로 종료된 과제 및 국내 기업 등의 신재생에너지 R&D를 통해 개발된 기술 중 상용화 가능 기술

구 분	신 청 자 격
지정공모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R&D 개발 성공과제중 상용화가 가능하고, 보급사업 추진에 적합한 설비(부품·소재 포함)
자유공모	○ 국내 기업 등의 신재생에너지 R&D를 통해 개발된 기술 중 상용화가 가능하고 보급사업 추진에 적합한 설비(부품·소재 포함)

주) 1. 잔여예산 발생 시 건물지원사업 후순위 사업에 지원 예정
2. 시범적 사업으로 기 지원받은 과제를 총 2회까지 신청 가능함
3. 과제목록에 없으나 국가가 지원한 R&D 과제에 포함되는 경우 해당기관의 성공과제 확인서 첨부 시 신청 가능
4. 지원액은 선정 평가위원회에서 별도 검토 후 적용 함
5. 신재생에너지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시범보급 설비로써 자가용에 한함
6.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서 제출 시 가점 부여
7. R&D결과물 중 혁신제품으로 인정받은 제품을 활용하는 경우 우선 지원
8. 지정공모 대상 중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기술개발 수행기업의 R&D개발과제에 해당하는 건은 지원 제외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국내 기술개발 수행기업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은 경우도 지원 제외

3. 지원기준 : 신청 사업비의 80% 이내

4. 사업기간 : 사업 승인일(최종 승인일 기준)부터 2022년 11월말까지 사업 완료

5. 지원 절차

사업타당성 검토 및 사업신청	○ 신청자는 참여기업과 사업 적합성 등 검토 후 계약 ○ 센터 홈페이지(https://www.knrec.or.kr) 전자민원에서 사업 신청
⬇	
신청서류 검토(센터)	○ 신청서류 제출·검토
⬇	
지원대상 평가·선정(센터)	○ 에너지원별 사업 적정성 등 평가·선정
⬇	
최종 사업계획서 제출	○ 평가·선정 이후 최종 사업계획서 제출
⬇	
최종 승인 및 선급금 신청	○ 사업승인에 따른 선급금 신청(필요시) 및 지급
⬇	
설비공사 및 설치확인 신청	○ 설비 공사 완료(REMS연계포함) 및 설치확인 신청(CID 코드 입력 포함) (신청자는 시공완료 상태 확인 필요)
⬇	
설치확인 및 보조금 지급(센터)	○ 설치확인 결과가 적합한 경우 보조금 지급(신청자 동의)

6. 참여기준

구분	참여 기준
참여기업	○ 다음 각 호를 만족하는 기업 1. 해당과제 국내 기술개발 사업 수행기업, 해당과제의 기술을 이전받아 정상 사업추진이 가능한 기업, 해당과제의 기술개발 사업 수행기업이 공급한 해당 부품·소재로 구성된 설비로 정상 사업추진이 가능한 기업 ※ 기술이전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신청 시, 기술이전 완료 증빙 등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R&D 부품·소재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신청 시, 해당과제의 기술개발 사업 수행기업으로부터 소재부품을 공급받아 설비를 구성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2. 원별 전문 면허 등록 기업 - 발전 설비 : 전기공사업 등록 - 열이용설비 : 기계설비공사업 또는 난방시공업(1종, 2종) 등록 - 폐기물설비 : 기계설비공사업 또는 공해방지시설업 등록
신청자	○ 일반 건물 및 부속시설물(주택 포함) 소유자 ○ 지원 제외 대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 및 시설물 - 사업 참여기업 소유 건물

7. 세부 추진내용

① 사업 신청

○ 신청자는 참여기업과 협의하여 **사업타당성을 검토**한 후, 센터 **홈페이지 (https://www.knrec.or.kr) 전자민원을 통하여 사업 신청**

○ 제출서류는 [별첨3] '건물지원사업 진행 관련 제출서류' 참고

② 평가 기준 및 방법

○ 계량 평가항목(10)

<table>
<tr><th>평가 항목</th><th>평가 기준</th><th>배점</th></tr>
<tr><td>1. 착공시기
(사업선정일 기준)</td><td><table><tr><td>구 분</td><td>점수</td></tr><tr><td>1개월 이내</td><td>5</td></tr><tr><td>1개월 초과 ~ 2개월 이내</td><td>3</td></tr><tr><td>2개월 초과 ~ 3개월 이내</td><td>1</td></tr><tr><td>3개월 초과</td><td>-1</td></tr></table></td><td>-1~5</td></tr>
<tr><td>2. 완료기한</td><td><table><tr><td>에너지원</td><td>기준</td></tr><tr><td>태양광, 집광채광</td><td>90일이내</td></tr><tr><td>태양열, 연료전지, 풍력</td><td>120일이내</td></tr><tr><td>BIPV</td><td>210일이내</td></tr><tr><td>지열, 기타</td><td>150일이내</td></tr></table></td><td>3</td></tr>
<tr><td>3.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td><td>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서 제출
* 공고상 접수마감 기한까지 인증취득이 완료된 사업에 한하여 인정</td><td>2</td></tr>
<tr><td rowspan="2">4. 사회복지시설, 다중이용시설, 산업단지
(추가 가점)</td><td>- 사회복지시설 증빙 서류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신청인일 경우 해당
- 다중이용시설 증빙 서류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시설 중 본 공고 "2.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경우</td><td>2</td></tr>
<tr><td>- 산업단지 입주 증빙 서류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8조에 의해 지정된 산업단지(국가산업단지, 일반 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 산업단지 입주계약확인서(www.factoryon.go.kr을 통해 발급가능)</td><td>1</td></tr>
<tr><td colspan="2">합 계</td><td>10</td></tr>
</table>

○ 비계량 평가항목(90)

평가 항목	평가 기준	배점
1. 사업적합성	사업목적 적합성/시설입지조건, 홍보효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적에 활용 가능 여부 등	20
2. 설치계획서내용	사업계획서 내용의 충실도/기술적용 타당성 사업비 산정의 적합성/설비 설치비용적정성 적용설비 구성제품의 품질 및 설비구성의 적합성 등	20
3. 사업수행능력	사업비 부담능력/전문기업과 신청자의 사업추진력 보유기술력/시공경험/전문기업자격	10
4. 설치효과 및 사후관리	설비설치에 따른 경제성 및 투자비 회수기간 설비 유지·보수 및 사후관리 능력, REMS 연계 및 유지관리 등	10
5. 기대효과	시범완료 후 상용화(실용화)가능 여부 신재생분야 산업 활성화 기여도/파급효과의 기여도 등	30
합 계		90

※ 1. 평가결과 평점이 70점 미만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2. 지원 대상 사업은 사업비 적정성을 판단하여 보조금 조정 가능

○ 평가방법

- 관련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 위원회에서 신청 사업 평가 후 지원 대상 선정
- 필요시 사전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문제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③ 설비 설치

○ 선정된 사업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22. 11월말까지 사업을 완료 하여야 하며 이월 불가함. 단, 부득이하게 사업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22. 10월말 까지 사유서를 제출하여 센터의 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설치완료보고서 제출 시 하자보증서 제출
 · 총사업비의 10%(단, 기업신용평가등급 B^+이상인 경우 5%)
 · 하자보증기간은 3년(단, 지열이용 설비 중 개방형의 경우 5년)
 · 계약명에 설비용량을 기재하여야 하며, 신청자를 피보험자(보험청구자)로 하여야 함

○ **인증제품 사용의무화**

- 해당 설비가 기존 제품을 활용하는 경우 인증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함

· 인증제품은 센터에 등록한 신재생에너지 **인증제품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인증기준 등이 없을 경우 KOLAS 인정 시험기관(해당 시험분야)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로 대체 가능**, 이를 변경할 시에는 소비자 동의서 등의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센터에 변경요청 및 승인을 받아야 함. 다만, KOLAS 인정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지정한 성능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도 제출 가능 함

○ **모니터링 설비 설치 및 성과보고 의무화**

- **설비용량에 관계없이** 에너지 생산량 및 가동 상태를 시간단위로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설비를 설치·가동**하여야 함(REMS 연계 및 유지관리 포함)

- **설치 후 3년간 매년 설비 가동현황,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등 사업성과 보고서와 사업성과보고서 상의 2. 사업성과 관련 증빙자료(에너지생산량, 절감량, 절감액 등)를 매 연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1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함**

8. 유의사항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또는 한국에너지공단) 이외의 기관 또는 국내 기업에서 R&D자금을 통해 개발한 기술의 경우 **성공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해당기관의 공문과 연구용역 완료보고서
- 특허증(자체 개발 기술의 경우)

○ 사후관리 의무이행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시범적 사업 참여기업은 당해 연도 설치한 설비에 대하여 설치 후 **3년 동안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센터에 보고하여야 함([별첨 8]성과보고서 참조)**

· 신청 시 사업계획서에는 예상실적 및 설비의 모니터링 운영계획을 포함해야함

· 매년 의무 사후관리 기간에 에너지원별 가동에 따른 성과를 설치전과 설치 후의 운영실적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별첨 8]

시범적 사업 성과보고서

1. 일반 현황 (□ 지정 □ 자유)

(사업 연도 : _____)

사업구분	시범적 사업		과제명		
시설 소유자	신청자		연락처		
	설치장소				
참여기업			설치확인일	년 월 일	
시설현황	에너지원	용량	형식(타입)	주요 설비 모델명	인증여부
사업비	(총 사업비 : 천원), (보조금액 : 천원), (자부담금 : 천원)				

2. 사업 성과

기 간	20 년 01월 01일 ~ 20 년 12월 31일					
신재생 생산량	□ 발전 분야	12월말 기준 당해 연도 총 발전량 ()kWh/년 당해 연도 월 평균 발전량 ()kWh/월		사용기간 전체 누적 발전량 ()kWh ※기간 : . . ~ . . .		
	□ 열 분야	12월말 기준 당해 연도 총 열 생산량 ()kcal/년 당해 연도 월 평균 열 생산량 ()kcal/월		사용기간 전체 누적 열 생산량 ()kcal ※기간 : . . ~ . . .		
	□ 기 타	12월말 기준 당해 연도 총 생산량 () 당해 연도 월 평균 생산량 ()		사용기간 누적 에너지 생산량 () ※기간 : . . ~ . . .		
에너지 절감량	하절기 (평균)	□ 전력 □ 등유 등 □ LNG 등 □ 기타()	()kWh/월 ()L/월 ()㎥/월 ()	동절기 (평균)	□ 전력 □ 등유 등 □ LNG 등 □ 기타()	()kWh/월 ()L/월 ()㎥/월 ()
	연 평균	□ 전력 □ 등유 등 □ LNG 등 □ 기타		()kWh/년 ()L/년 ()㎥/년 ()		
에너지 절감액	실 연간절감액		원/년	실 가동 월수	()개월	
기타성과						

3. 유지보수 내용

(전체 사용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table>
<tr><td rowspan="7">유지보수</td><td colspan="3">☐ 없음 ☐ 1회 ☐ 3회 미만 ☐ 5회 미만 ☐ 5회 이상</td></tr>
<tr><td rowspan="6">수리내역</td><td>수리일</td><td>주요 수리 내용</td></tr>
<tr><td></td><td></td></tr>
<tr><td></td><td></td></tr>
<tr><td></td><td></td></tr>
<tr><td></td><td></td></tr>
<tr><td rowspan="5">☐ 정상사용
☐ 미사용
☐ 부분고장</td><td>원 인</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수리가능 여 부</td><td>☐가 능</td><td>☐A/S희망 ☐자체수리 ☐그대로사용 ☐폐기 희망</td></tr>
<tr><td>☐불가능</td><td>☐폐기 희망</td></tr>
<tr><td>하자보증</td><td colspan="2">기간 (. . . ~ . . .)</td></tr>
<tr><td rowspan="2">A/S</td><td colspan="2">A/S 비용 자체부담 의지 ☐유 ☐무</td></tr>
<tr><td colspan="2">☐참여기업 직접 수행 ☐기타 업체</td></tr>
</table>

4. 기타사항[신청자(기관) 확인사항]

<table>
<tr><td rowspan="5">설비
가동</td><td>설치 후 경제성 수준</td><td colspan="3">☐ 매우향상 ☐ 향상 ☐ 변화없음 ☐ 하락 ☐ 매우하락</td></tr>
<tr><td>설비 만족도</td><td colspan="3">☐ 매우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 매우불만족</td></tr>
<tr><td rowspan="3">불만족 이유</td><td>☐ 운전, 관리가 어렵다</td><td>☐ 경제성이 낮다</td><td>☐ 성능이 낮다</td></tr>
<tr><td>☐ 외관상 좋지 않다</td><td>☐ 고장이 잦다</td><td>☐ A/S받기가 어렵다</td></tr>
<tr><td>☐ 안전하지 않다</td><td colspan="2">☐ 기 타 ()</td></tr>
<tr><td rowspan="3">설치
참여기업</td><td>만족도</td><td colspan="3">☐ 매우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 매우불만족</td></tr>
<tr><td rowspan="2">불만족 이유</td><td>☐ A/S받기가 어렵다</td><td colspan="2">☐ 설비관리 등 지속적 관리를 해주지 않는다</td></tr>
<tr><td>☐ 친절하지 않다</td><td colspan="2">☐ 기타 ()</td></tr>
<tr><td colspan="2">기타 사용자 불편 및 건의사항</td><td colspan="3"></td></tr>
</table>

※ 붙임 : 2. 사업성과 관련 증빙자료 1부

위와 같이 시범적 사업의 성과 보고서를 제출 합니다.

20 . . .

신청자(기관) : (확인)

참여기업 : (확인)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

[별첨 9]

R&D 기술개발 과제 개요서

<table>
<tr><td>과 제 명</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5">과제구분</td><td rowspan="3">□ 지정</td><td>연구관리기관</td><td>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td></tr>
<tr><td>세부사업</td><td></td></tr>
<tr><td>과제형태</td><td></td></tr>
<tr><td rowspan="2">□ 자유</td><td>연구관리기관</td><td></td></tr>
<tr><td>사 업 명</td><td>(관리기관의 연구사업명 기재)</td></tr>
<tr><td>주관기관</td><td colspan="3"></td></tr>
<tr><td>참여기관</td><td colspan="3"></td></tr>
<tr><td>과제기간</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2">과제개요</td><td>신재생분야</td><td colspan="2">□ 태양광 □ 태양열 □ 지열 □ 연료전지 □ 풍력 □ 소수력
□ 바이오 □ 목재펠릿보일러 □ (직접기재)
※ 융합기술인 경우 해당분야 모두 체크</td></tr>
<tr><td>과제요약</td><td colspan="2">(과제내용을 3~4줄로 요약)</td></tr>
<tr><td>시범적사업
적용내용</td><td colspan="3">(과제내용 중 금번 시범사업에 적용되는 사항)</td></tr>
<tr><td rowspan="4">동일과제
시범적사업
추진실적</td><td>선정년도</td><td>건 수</td><td>정부지원 보조금(천원)</td></tr>
<tr><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r>
<tr><td>합 계</td><td></td><td></td></tr>
</table>

[별첨 10]

건물지원사업 관련 공단 연락처

○ 고장접수지원센터 : ☎1544-0940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통합콜센터 : ☎1855-3020

○ 한국에너지공단 종합지원센터(지역본부)

지역본부	소재지	전화	팩스
서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4 KT여의도 타워 11층	02)2071-3812, 3814	02)2071-1928
경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140(하동) 수원컨벤션센터 5층 501~505호	031)300-9941	031)300-9999
인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8 (구월동) 인천 YWCA빌딩 3층	032)249-1935	032)249-1901
강원	강원도 춘천시 경춘로 2357 (온의동) 새마을금고연합회빌딩 2층	033)248-8412	0508)8549-1936
세종 충북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서로 100 한국자산관리공사 3층	043)901-6014	0508)8549-1934
대전 충남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480 미래에너지움 3층	042)323-4400	0508)8549-1933
전북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 (팔복동 1가)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2층	063)906-6924	0508)8549-1937 063)906-6998
광주 전남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23 (오룡동)	062)602-0021	0508)8549-1932
부산 울산	부산광역시 연제구 명륜로 10 (거제동) 한양타워빌 1105호	051)999-6813	051)503-7742
대구 경북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52 (대천동)	053)580-7911	053)580-7998~9
경남	경상남도 의창구 원이대로 362 (대원동) 창원컨벤션센터(CECO) 1층 103호	055)600-8121~4	055)600-8199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17 (노형동) 전문건설회관 4층	064)909-0305, 0302	064)909-0309